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2. 7. . (제 회)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7. .

법제처 심사 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 의결주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편물 감소 등 우정사업의 경영환경 악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에게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다른 법률에 의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의 취급 근거를 마련하고,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서면 심의 근거를 마련하며,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우편요금 및 수수료의 전문적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한미 FTA시행으로 민간에 개방된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 조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여 우정사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에 의해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취급 근거 마련(안 제2조제1호)

나.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서면심의 근거 마련(안 제5조제2항)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면심의 실시

다.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우편요금 및 수수료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안 제5조의2제1항제4호)

우편요금, 우편수수료 조정·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

라. 한미 FTA 시행으로 민간에 개방된 분야의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의 조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결정(법 제15조의2)

1)「우편법」제1조의2제2호에 의한 통상우편물(같은 조 제7호에서 정한 서신은 제외한다)에 관한 우편요금의 결정

2) 우정사업조직에서 송달하는 서신에 관한 우편요금(「우편법」제2조제3항에 의해 누구든지 서신 송달 행위를 할 수 있는 서신에 한정한다)의 결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법률 제 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령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우정사업"이란 우편,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우정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우편

나. 우편환

다. 우편대체

라. 우체국예금

마. 우체국보험

바. 다른 법령에서 우정사업조직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우편요금 및 우편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 “지식경제부장관이 국내외 소포우편에 관한 요금, 국제특급우편요금 및 우편환요금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을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금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우편법」 제1조의2제2호에 의한 통상우편물(같은 조 제7호에서 정한 서신은 제외한다)에 관한 우편요금
2. 우정사업조직에서 송달하는 서신에 관한 우편요금(「우편법」 제2조제3항에 의해 누구든지 서신 송달 행위를 할 수 있는 서신에 한정한다)
3. 국내외 소포우편물에 관한 우편요금
4. 국제특급우편물에 관한 우편요금
5. 우편환에 관한 요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제4호는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우정사업"이란 우편,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우편 나. 우편환 다. 우편대체 라. 우체국예금 마. 우체국보험 바. 다른 법령에서 우정사업조직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다만,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분과위원회) ① (생 략)	제5조의2(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우편요금 및 우편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요금 결정에 관한 특례) 지식경제부장관이 국내외 소포우편에 관한 요금, 국제특급우편요금 및 우편환요금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5조의2(요금 결정에 관한 특례)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금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우편법」 제1조의2제2호에 의한 통상우편물(같은 조 제7호에서 정한 서신은 제외한다)에 관한 우편요금 2. 우정사업조직에서 송달하는 서신에 관한 우편요금(「우편법」 제2조제3항에 의해 누구든지 서신 송달 행위를 할 수 있는 서신에 한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3. 국내외 소포우편물에 관한 우편요금 4. 국제특급우편물에 관한 우편요금 5. 우편환에 관한 요금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과	
연 락 처	(02) 2195 - 1115